

은풍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5. 17. ~ 5. 20.(4일간)
-  감사범위 : 2014. 6. 24 ~ 2016. 5. 16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22건(주의 8, 시정 4, 현지시정 10)
 - 본 처분 12건(주의 8, 시정 4)
- 재정상 조치
 - 3건 222천원(회수 3건 222천원)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계	은풍면	12건	주의8 시정4	회수3 / 222,000	
1	총무담당	복무규정 미 준수	주의		
2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세입 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미흡	주의		
3	"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납부 지연	주의		
4	"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관리 소홀	주의		
5	"	공사비 미정산 과다 지급 (□□□ 주차장정비)	시정	회수	106,000
6	"	공사비 미정산 과다 지급 (●●●● 배수로설치)	시정	회수	52,000
7	"	공사비 미정산 과다 지급 (△△△ 배수로설치)	시정	회수	64,000
8	복지담당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주의		
9	민원담당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주의		
10	산업담당	영농안전장비 농가공급 부적정	주의		
11	"	구제역 소독약품 관리대장 작성 소홀	주의		
12	"	산불진화장비 관리대장 작성 소홀	시정		

주요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에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공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출·퇴근 시간 미 준수
 - ▶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통장잔액 불일치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 납입)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을 수납하면서 4건 594,500원을 지연 납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재활용품 수집 증대를 위하여 단체 또는 마을 단위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시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43063(2014.12.17.)호」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반드시 단체 또는 마을 공동계좌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단체 또는 마을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여 향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시 단체 또는 마을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확보하지 않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6.03.15. ■■■■(주) ○○○와 계약한 ▲▲1리(□□□) 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포장시공 시 양생 비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06,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06,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03.09. ♥♥♥♥(주) △△△과 계약한 ♣♣2리(♠♠♠♠)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덤프트럭 적재시간(t1) 10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52,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52,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03.12. □□□□(주) ○○○와 계약한 ▲▲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덤프트럭 적재시간(t1) 10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의 비율만큼 공제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64,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64,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4년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있음에도, 2014. 10. 02. 통보된 1가구(김☆☆)에

대하여 6개월 내에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조사자 및 이장확인을 누락하는 등 업무에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농정과-4212 (2016.03.09.)호와 관련하여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영농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하는 영농안전장비를 읍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에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2016년 영농안전장비 120세트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9농가에 2년 연속하여 중복 공급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제9호 및 산림축산과-28099(2014.12.12.), 산림축산과-6203(2016.03.15.)호에 의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읍면에 배부한 소독약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구제역 소독약품을 수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공급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산림축산과-5723(2016. 3.10.)호에 의거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읍면에 배부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산림축산과에서 배부한 산불진화장비를 수령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함

▶ 산불진화장비 관리대장 기록 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